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57
----------	------

2024년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허훈 의원(찬성 23명)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허훈 의원)

#### 1. 제안이유

- 각종 콘서트 등 문화공연 개최 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경우 실제로는 별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 또한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연자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관람권 판매 시에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라. 입법예고 : 2024. 6. 4.~ 2024. 6. 8.(의견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7조1) 및 시행령 제3조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3)(별표2),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에서는 이러한 휠체어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석은 설치되어 있어도 실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판매하지 않거나, 구매 방법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적절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3)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 2 개정안의 주요 사항 검토

### □ 최적관람석의 운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 개정안은 본 조례 제4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최적관람석과 일반석을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생략)	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설치 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으나 휠체어석 설치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관람석·열람석의 평가 항목으로 공연장 등에서 관람석의 휠체어 사용자 좌석 비율,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유효바닥면적, 관람석의 시야, 영화관 관람석 설치 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관람석의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비율은 설치율<sup>4)</sup>(74.3%)과 적정 설치율<sup>5)</sup>(68.1%)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람석의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비율 역시 설치율(68.4%), 적정 설치율(55.3%)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법적 기준에 적합한 좌석 비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 기타 시설 〉

(단위: 개, %, %p)							
구 분	대상건물	기준 항목	설치	설치율	적정설치	적정설치율	설치-적정차이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비율	190,991	576	428	74.3%	392	68.1%	6.3%p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190,991	428	425	99.3%	418	97.7%	1.6%p
유효바닥면적	190,991	428	411	96.0%	383	89.5%	6.5%p
관람석의 시야	190,991	72	72	100.0%	69	95.8%	4.2%p
영화관 관람석 설치위치	190,991	51	51	100.0%	27	52.9%	47.1%p
공연장 관람석 설치위치	190,991	54	54	100.0%	28	51.9%	48.2%p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비율	190,991	414	283	68.4%	229	55.3%	13.1%p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	190,991	283	280	98.9%	275	97.2%	1.8%p
열람석 구조	190,991	283	280	98.9%	271	95.8%	3.2%p
무대 높이차이 제거	190,991	341	207	60.7%	171	50.2%	10.6%p
계	190,991	2,930	2,491	85.0%	2,263	77.2%	7.8%p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평가함.

- '적정' 평가는 현행법과 일치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설치한 경우
- '미흡' 평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현행법의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미설치' 평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거나 현행법의 설치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설치율(%): 기준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지만, 항목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냄

\* 적정설치율(%): 항목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법 규정에 부합되게 설치되었는지 정도를 나타냄

4) 설치율: 편의시설이 설치된 정도로(편의시설 설치건수)/(편의시설 설치 기준 항목 수)의 백분율로 구함.

5) 적정설치율: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정도로(적정 편의시설 설치 건수)/(편의시설 설치 기준 항목 수)의 백분율로 구함.

- 또한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로 분류된 공연장의 관람·열람석·무대의 설치율은 86.9% 적정 설치율은 79.4%를 보임.
- 서울시의 경우 기타 시설(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작업대 등) 중 관람석의 확보 비율과 구조의 설치율은 88.6%, 적정 설치율은 78.6%로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는 10%로 나타남.
- 최근 지체장애인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들과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나와야 했던 사연<sup>6)</sup>이 있었고, 콘서트장, 공연장 등의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자들은 차별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공연장 휠체어석은 구매 방법도 일반 좌석과 다르게 온라인 구매는 거의 할 수 없고 전화예매만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임. 휠체어석이 있어도 대부분 맨 뒷좌석이나 양쪽 끝에 있어 ‘원하는 자리’에서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음.
- 실제로 최적관람석 대상 시설 25개소 중 자체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 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고 있음

---

6) [강원래 거부당한 영화관 ‘문턱’...“식당도, 커피숍도 늘 막힙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2024.2.17](#)

〈 서울시 문화 시설 최적관람석 현황 〉

연번	구분	시 설 명	총좌석수	최적관람수			비고
				합 계 (a+b)	월체어석 (a)	높인· 임산부 좌석등(b)	
1	공연장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301	3	3	0	
2	공연장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301	3	3	0	
3	공연장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퍼포먼스홀	283	3	3	0	
4	공연장	세종대극장	3,022	20	20		
5	공연장	세종M씨어터	609	7	7		
6	공연장	세종체임버홀	443	5	5		
7	공연장	세종S씨어터	320	4	4		
8	공연장	세종체임버홀	443	5	5		
9	공연장	세종S씨어터	320	4	4		
10	공연장	서울 남산국악당	302석	16석 (월체어석 4석 포함)	4	12	
11	공연장	블루스퀘어 뮤지컬 공연장	1,767	18	18	10석 유아동반석	
12	공연장	블루스퀘어 콘서트 공연장	1,400	14	14		
13	공연장	삼청각	110	4	4	0	
14	공연장	서울 돈화문국악당	140석	2	2	0	
15	공연장	문화비축기지 T2 공연장	300 (이동석점이석의자)	해당없음			
16	관람장	서울월드컵경기장	66,704	288	288		
17	관람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020	20	20		
18	관람장	고척스카이돔	16,670	40	40	-	
19	관람장	장충체육관	4,507	40	40		
20	관람장	목동운동장(주경기장)	15,511	6	6		
21	관람장	목동운동장(야구장)	10,432	46	46		
22	관람장	목동실내빙상장	5,000	7	7		
23	관람장	잠실주경기장	65,632	66	66		
24	관람장	잠실야구장	24,339	47	47		
25	관람장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1,044	30	30		

- 한편,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척스카이돔은 2023년부터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대관 허가 조건에 ‘휠체어석 별도 예매’ 규정(유선 예매)을 도입하여 시행 중임.
- 동 시설공단의 ‘문화공연 시 휠체어석 별도 예매’ 규정은 콘서트 등 문화공연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공연기획사 등 대관 희망 업체가 반드시 휠체어석 별도 예매를 진행해야만 대관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음.
- 최근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sup>7)</sup> 휠체어석은 있으나 실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공연장이 많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와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다만,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제재 시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음. 더구나 온라인 구매 등을 위해서는 별도 장애인 증빙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수 있음.
- 서울시가 직영·위탁 운영하는 체육·문화 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24. 5월)한 바, 최적관람석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최적관람석 이용대상자 여부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7) 통합위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 의무화·온라인 예매 도입해야” | 연합뉴스 (yna.co.kr), 2024.3.5.



###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상 설치 의무인 휠체어석이 실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있음.
-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람석을 온라인 및 현장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불편 사항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온라인 구매 시 공연장 등을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최적관람석 대상자 사전확인 시스템 구축 없이 판매할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하겠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길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길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57
----------	-------------

제안연월일 : 2024년 6월 1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최적관람석 구매방식을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2제2항 )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온라인 구매가 모두”를 “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장애인 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생략)</p> <p>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 ----- ----- ----- ----- 온라인 또는 유선 구매가 ----- -----.</p>

##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최적관람석의 관리)”를 “(최적관람석의 관  
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  
권 판매 시 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생략)</p> <p>&lt;신설&gt;</p>	<p>제4조의2(최적관람석의 관리 및 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관람권 판매 시 <u>최적관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또는 유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u></p>